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계획하는 경우에는
-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 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수질오염 방지시설	분뇨 처리 시설	산동면 성수리 715번지(환지 936) 일원	-	증)30,283.1	30,283.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수질오염 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분뇨처리시설) 신설 A=30,283.1㎡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설 결정함

○ 토지이용계획도 “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0,283.10	100.0	
시설용지	소 계	4,525.71	15.0	
	가축분뇨처리시설	4,116.00	13.6	가축분뇨 처리시설, 차량소독시설, 차량 계근대
	관리동	409.71	1.4	관리동
도로		5,289.00	17.4	
주차장		554.00	1.8	11면 (법적주차대수 해당없음)
공공시설	소계	3,233.00	10.7	
	체육시설	990.00	3.3	족구장, 배드민턴장
	광장 및 휴게시설	2,243.00	7.4	광장, 휴게시설
녹지		16,681.39	55.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추진경과(2011년 7월 ~ 2013년 3월)

- 2011. 7. 1 사업대상자 확정(2011. 6. 29 심사)
- 2012. 1.31 ~ 7.22 산동면 성수리 주민 등과 대화 45회
축산단체 등 설명회 7회, 대책회의 8회 등
- 2012. 7.14 산동면 성수1리 주민총회 수용 가결
- 2013. 1. 7 주민요구사항 예산반영 결과 및 향후 반영계획 알림
- 2013. 1.11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영향평가 용역수행 회의

5. 검토의견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 구미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건립하고자 시설 결정된 사항으로서,
-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 도모와 경종농가 화학비료 절감, 유기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아울러, 주민대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해당지역 및 인근 지역주민생활과 환경에 밀접한 사안인 만큼,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완벽한 시설건립과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필요로 함.

□ 이상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